

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(우형찬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849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10월 15일
발 의 자 :우형찬 의원(1명)
찬 성 자 :고병국, 김인제, 김태호,
김화숙, 문영민, 송재혁,
이광호, 이현찬, 임만균,
최 선, 추승우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에 “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”으로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“자동차정비에 관련된 국가 자격증”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근거가 없어 정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실정임
- 따라서,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의 자격조건에 포함하여 인력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의 자격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5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,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것”을 “것(다만,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.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5조(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)</p> <p>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(이하 “정비업“이라 한다)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. ~ 다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| <p>제5조(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<u>것(다만,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.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